

자산보관 •관리보고서

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조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248 조 제 1 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신탁업자명 :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문의가능 전화번호 : 02-2004-8963/0991

1.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가. 집합투자기구 명칭: 피델리티 미국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재간접형)

나. 집합투자기구분류: 증권[주식-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다. 보관 •관리기간: 2012.01.01 - 2012.12.31

라. 집합투자업자: 피델리티자산운용(주)

마.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대우증
권, 유진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한화
투자증권, 에이치엠씨투자증권, 동양증권, NH농
협증권, 삼성증권, 동부증권, 메릴린치증권서울
지점,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리딩투자증권, 하
나대투증권, 비오에스증권, 하나은행, 대구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홍콩상하이은행, 메리츠종합금융
증권, 아이엔지은행, 미래에셋생명

2.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변경 일자	변경사 유	주요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2012. 05. 02	제2조	①제 231 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형집합 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으로서	①<삭제> ②<추가> 이투자신탁은 (중략)법제233 조의규정에의한 모자형집합투자 기구의자투자신탁
	제20조	종류 CP 수익증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따라투자 하는 퇴직연금및개인퇴 직계좌가입자	종류CP수익증 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2 조제 11 호에서 규정한 적립금으로 투 자하는 경우
	제20조 의3	(판매수수료) 1.5% 범위 이내	(판매수수료) 1.0% 범위 이내
	26 조 (환매연 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중략)	<삭제>

		통지하여야 한다.	
	26 조 (환매연 기)	나.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환매가연기된 경우다.-라. (기재생략)	나.모투자신탁 이 투자하는집합투 자기구의 수익증권의 환매가연기된 경우다(기재생 략).
	제 39 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삭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제 48 조	서류 작성과 함께 투자신탁의 외부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 다.
	제 49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략) 게시하여야 한다.	<삭제>
	제 49 조		<추가>제 4 항및 신탁계약의(중 략)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07. 06	모투자 신탁의 주된 투자대 상자산 변경에 따른 투자신탁 유형 변경	증권(주식형)	증권(재간접형)
	신규 종류 추가	-	종류 A-e, 종류 C-e 및 종류 C-w 내용 추가

3.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해당사항없음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날짜	펀드명	내용	가부결 여부
2012.06.19	피델리티 미국증권 자투자 신탁 (주식- 재간접형)	피델리티 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주된투자대상의 변경 -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사의 피델리티 미국증권모투자신탁(주식)의 주된투자대상을 기존 해외주식에서 역외펀드인 Fidelity Funds-American Growth Fund로 변경하고, 펀드유형도 주식형에서 주식-재간접형으로 전환하는	부결

		내용의 집합투자규약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변경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행될 수 있도록 집합투자증권 등 투자대상 자산에 대한 한도 및 제한에 대한 적용을 규약 변경 시행일로부터 1월간 유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07.02	피델리티 미국증권 자투자 신탁 (주식- 재간접형)	상동	가결

예금보험공사의보호를받지못함에따라투자원리금 전액이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투자신탁의운용및투자등에관하여보다 자세한사항은해당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를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6. 회계감사인의 선임 •해임에 관한 사항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회계 감사인명	계약 기간	감사 보수	계약 방법
삼일 회계법인	1년	154만원	서면계약	-	-	-	-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경우, 위예명기원회계감사인 보수금액은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7.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

☐ 투자설명서가법령및집합투자규약에부합하는지의 여부- 부합함

☐ 자산운용보고서의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적정함

☐ 위험관리방법의작성이적정한지여부-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공정함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적정함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 집합투자신탁규약 또는투자설명서에위반된경우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이에대한집합투자업자의이행명세- 해당사항없음

☐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

-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9조제1항제1호에의거하여집합투자업자가운용하는전체집합투자기구의집합투자재산을보관 관리하는신탁업자가둘이상인경우에는해당신탁업자의확인사항이 아님.

☐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이투자신탁은실적배당상품으로은행예금과는 달리